

회계학 1부

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

【문제 1】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세무의 20×2년도 비교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 계산서이다. 이들 자료와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비교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2.12.31	20×1.12.31	계정과목	20×2.12.31	20×1.12.31
현금및현금성자산	₩74,000	₩36,000	매입채무	₩70,000	₩44,000
매출채권	53,000	38,000	미지급이자	18,000	16,000
손실충당금	(3,000)	(2,000)	미지급법인세	2,000	4,000
재고자산	162,000	110,000	사 채	200,000	0
금융자산(FVPL)	25,000	116,000	사채할인발행차금	(8,000)	0
차량운반구	740,000	430,000	자 본 금	470,000	408,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	(100,000)	자본잉여금	100,000	100,000
			이익잉여금	139,000	56,000
자산총계	₩991,000	₩628,000	부채와자본총계	₩991,000	₩628,000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금액
매 출 액	₩420,000
매출원가	(180,000)
판매비와관리비	<u>(92,000)</u>
영업이익	148,000
유형자산처분이익	4,000
금융자산(FVPL)평가이익	5,000
금융자산(FVPL)처분손실	(2,000)
이자비용	<u>(8,000)</u>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47,000
법인세비용	<u>(24,000)</u>
당기순이익	₩123,000
기타포괄손익	<u>0</u>
총포괄이익	₩123,000

[추가정보]

1. 금융자산(FVPL)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취득 또는 처분한 자산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오고 있다.
2. 20×2년 중에 취득원가가 ₩100,000이고, 80% 감가상각된 차량운반구를 ₩24,000에 매각하였다.
3. 20×2년 중에 액면금액이 ₩100,000인 사채 2좌를 1좌당 ₩95,000에 할인발행하였다.
4. 20×2년도 자본금의 변동은 유상증자(액면발행)에 따른 것이다.
5. 포괄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92,000에는 매출채권 손상차손 ₩2,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급여와 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다.
6. 포괄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8,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2,000이 포함되어 있다.
7. 이자 및 배당금 지급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음 1) (주)세무가 20×2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①~⑤에 알맞은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현금유출은 (-)로 표시하고 현금유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10점)

영업활동현금흐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가감:	
감가상각비	①
매출채권의 증가(순액)	②
재고자산의 증가	?
금융자산(FVPL)의 감소	?
매입채무의 증가	?
유형자산처분이익	?
이자비용	③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④
이자지급	?
법인세의 납부	?
배당금지급	?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⑤

물음 2) (주)세무가 20×2년도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직접법으로 작성한다고 가정하고, 다음 ①~⑥에 알맞은 금액을 계산하시오. (단, 현금유출은 (-)로 표시하고 현금유출입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하시오.) (8점)

영업활동현금흐름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 ①	
금융자산(FVPL)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②	
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	③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	
이자지급	④	
법인세의 납부	⑤	
배당금지급	⑥	
영업활동순현금흐름		₩ ?

물음 3)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작성될 수 있다. 직접법과 간접법의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4점)

물음 4) 20×2년도 차량운반구 취득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을 계산하시오. (4점)

물음 5) 20×2년도 현금흐름표 상 재무활동순현금흐름을 계산하시오. (단, 현금유출의 경우에는 금액 앞에 (-)표시를 하시오.) (4점)

【문제 2】 (주)대한은 20×0년 12월 31일에 항공기를 ₩5,198,927에 취득하였다. 리스제공자인 (주)대한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세무와 20×1년 1월 1일에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다음 <자료>와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자 료 >

1.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이고, 만료일은 20×4년 12월 31일이다. 이 기간 동안은 리스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다.
2. 기초자산(항공기)의 공정가치는 ₩5,198,927이며, 경제적 내용연수는 6년이고 내용연수 종료 후 추정잔존가치는 없다. 해당 기초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3.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해당 기초자산 잔존가치는 ₩500,000으로 추정되며, (주)세무의 보증잔존가치는 ₩200,000이다. 추정 잔존가치 중 (주)세무가 보증한 잔존가치 지급예상액은 ₩200,000이다.
4. 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고정된 금액을 수수한다.
5.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소유권이전약정이나 염가매수선택권은 없으며, 리스기간 종료시 기초자산을 (주)대한에 반환하여야 한다.
6. (주)대한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300,000이며, (주)세무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200,000이다. 이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7. (주)대한의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며, (주)세무의 증분차입이자율은 12%이다. (주)세무는 (주)대한의 내재이자율을 알고 있다.
8. (주)세무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는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잔존가치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9. 현재가치 계산 시 아래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며, 금액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예 : ₩5,555.5 → ₩5,556]

기간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		정상연금 ₩1의 현가계수	
	10%	12%	10%	12%
1	0.9091	0.8929	0.9091	0.8929
2	0.8264	0.7972	1.7355	1.6901
3	0.7513	0.7118	2.4868	2.4018
4	0.6830	0.6355	3.1699	3.0373

물음 1) (주)대한이 매년 받게 될 고정리스료를 계산하고, (주)대한이 리스개시일에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5점)

①

고정리스료	
-------	--

②

(차변)	(대변)
------	------

물음 2) (주)대한이 동 리스거래로 인해 인식하게 될 리스총투자, 미실현금융수익을 계산하시오. (4점)

리스총투자	미실현금융수익
①	②

물음 3) (주)세무가 리스개시일에 계상해야 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산하고, (주)세무가 리스개시일에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6점)

①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②

(차변)	(대변)
------	------

물음 4) 동 리스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주)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금액 앞에 (-)표시를 하시오.) (6점)

(주)대한의 20×1년도 당기순이익	(주)세무의 20×1년도 당기순이익
①	②

물음 5) (주)대한의 20×2년도 이자수익과 (주)세무의 20×2년 말 미상환부채를 계산하시오. (6점)

(주)대한의 20×2년도 이자수익	(주)세무의 20×2년 말 미상환부채
①	②

물음 6) 만일, 20×1년 12월 31일 해당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추정치가 ₩300,000으로 하락하였다면, (주)대한이 20×1년 말 리스채권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을 계산하시오. (3점)

【문제 3】 (주)세무는 단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20×1년도 1월과 2월의 원가계산 및 손익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점)

1) 제품생산 및 판매 자료

구 분	1월	2월
월초 재고수량	0단위	100단위
생산량	400단위	500단위
판매량	300단위	300단위
월말 재고수량	100단위	300단위

2) 실제 발생원가 자료

원 가 항 목	1월	2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100	₩1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40	₩4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20	₩2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0	₩10
월 총고정제조간접원가	₩12,000	₩12,000
월 총고정판매관리비	₩2,000	₩2,000

3) 단위당 판매가격은 ₩400이며 월초 및 월말 재공품은 없다.

물음 1)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제전부원가계산과 실제변동 원가계산에 의한 20×1년도 1월과 2월의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5점)

물음 2) 물음 1)에서 실제전부원가계산과 실제변동원가계산의 20×1년도 1월과 2월의 영업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를 구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여 두 가지 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제전부원가계산에 의한 20×1 년도 2월의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5점)

물음 4) (주)세무는 정상원가계산(평균화원가계산, normal costing)과 원가차이 조정 시 매출원가조정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계작업시간이며 20×1년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 산정을 위한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은 ₩220,800(변동제조간접원가 ₩76,800, 고정제조간접원가 ₩144,000)이고 연간 예정조업도는 9,600시간(제품 4,800단위)이다. 월 예정기계작업시간은 800시간이나 실제기계작업시간은 1월에 800시간, 2월에 1,000시간이 발생하였다. 한편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월 예산금액은 실제발생액과 동일한 ₩12,000이다. 정상전부원가계산과 정상변동원가계산에 의한 20×1년도 1월과 2월의 원가차이 조정 후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5점)

【문제 4】 (주)세무는 한국에 있는 사업부(국내사업부)와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업부(해외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사업부에서는 단일제품인 제품A를 생산하고 있다. 20×1년도 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재고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 (20점)

1) 국내사업부는 제품A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연간 20,000단위(단위당 판매가격 ₩10,000)를 안정적으로 판매하며, 해외사업부로 일정 단위를 대체하여 해외에서 판매할 수도 있다. 제품A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6,00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600
연간 고정제조원가	₩50,000,000
연간 최대조업도	25,000단위

- 2) 국내사업부는 제품A를 해외사업부로 대체하는 경우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는 ₩600에서 ₩200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3) 해외사업부는 제품A를 한국에서 수입하여 현지에서 재가공 없이 연간 5,000단위(단위당 판매가격 ₩12,000)를 안정적으로 판매 가능하다. 다만, 해외사업부는 제품A를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국내사업부로부터 대체받는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세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관세는 모두 해외사업부에서 부담한다.
- 4) 해외사업부는 제품A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해외사업부는 제품A를 국내사업부로부터 대체받아 판매하지 못할 경우 국내의 다른 공급업자로부터 단위당 ₩9,600(관세 포함)에 구입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 5)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의 책임자는 각 사업부 경영에 관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사업부의 성과는 경제적 부가가치(EVA: Economic Value Added)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내사업부의 투자자본은 ₩100,000,000이며, 경제적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은 6%이라고 가정한다.
- 6) 국내사업부와 해외사업부의 법인세율은 각각 20%와 10%의 단일비례세율을 적용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추가되는 수익과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물음 1) 국내사업부가 제품A를 국내에서만 판매할 경우 경제적 부가가치 ₩2,960,000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판매수량은 몇 단위인가? (5점)

물음 2) 해외사업부의 책임자는 국내사업부의 책임자에게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 단위당 ₩8,000(관세 불포함)에 5,000단위를 해외사업부로 대체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국내사업부가 해외사업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5,000단위(최대조업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조설비에 ₩20,000,000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 시설 투자로 인해 투하자본은 ₩120,000,000으로 변동되고, 투하자본 증가에 따라 제품A를 해외사업부로 대체하는 기간에 국내사업부는 연간 ₩3,000,000의 고정제조원가가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사업부의 책임자가 해외사업부로 5,000단위 대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국내사업부의 세후 영업이익과 경제적 부가가치의 증감은 각각 얼마인가? (5점)

물음 3) 경제적 부가가치에 의해 사업부의 성과평가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부의 입장에서 해외사업부로 5,000단위를 대체함에 있어서 받고자 하는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얼마인가? (단, 국내외 판매환경에는 변화가 없으며, 투하자본의 증가액과 연간 고정제조원가의 증가액은 ‘물음 2)’의 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5점)

물음 4)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양국 협의에 의해 제품A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국내사업부는 해외사업부로 제품A를 대체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며, 투하자본의 증가액과 연간 고정제조원가의 증가액은 ‘물음 2)’의 자료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5점)

(1) 기업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단위당 대체가격은 얼마인가?

(2)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도 기업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체가격을 결정하였다면 관세 철폐 후 기업 전체의 세후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감하였는가?

회계학 2부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9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30점)

1. 갑의 금융소득 관련자료

- (1) 국내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이자: ₩8,000,000
-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000,000
-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전액 이자수익으로 구성됨): ₩9,000,000
- (4) 발행일에 매입하여 계속 보유중인 장기채권의 이자(2011.11.30. 발행, 만기 10년): ₩4,000,000
-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 ₩12,000,000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없음): ₩5,000,000

2. 갑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자료

- (1)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비출자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6,000,000의 급여를 12개월간 수령하였다.
- (2) 갑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500,000씩 12개월간 수령하였다.
- (3) 갑은 법인세법상 연간 적정임대료가 ₩30,000,000인 사택을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4) 갑은 임원기밀비(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치 않음)로 매월 ₩1,000,000을 12개월간 수령하였다.
- (5) 갑이 ₩40,000(1매당 가격 ₩5,000)에 구입한 복권 중 1매가 3등에 당첨되어 ₩30,000,000의 당첨금을 수령하였다.
- (6) 갑은 5년간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20,000,000에 양도하였다.
- (7) 갑은 (주)A가 조직한 지역사회봉사동아리 회장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봉사상과 부상으로 ₩3,000,000을 받았다.
- (8) 갑이 11년간 소유하고 있는 150년 전 제작된 골동품 1점을 양도하고 ₩120,000,000을 수령하였다. (골동품 소유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는 ₩100,000,000임)

3. 갑의 양도소득 관련자료

갑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을과 병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었다. 양도한 주택 및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주택	비상장주식
양도일	2019.3.5.	2019.8.17.
보유기간	5년 4개월	5년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1,000,000,000	₩200,000,000
양도가액 (기준시가)	800,000,000	180,000,000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500,000,000	-
취득가액 (기준시가)	300,000,000	90,000,000

- (1)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이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50,000,000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0이 발생하였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음)
- (2) 비상장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B(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가 발행한 것이며 갑은 (주)B의 대주주가 아니다.
- (3)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은 ₩100,000,000이고 감정가액은 ₩95,000,000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도 아님)
- (4)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2,000,000(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발생하였다.
-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 10%(1세대 1주택의 경우 40%)이다.

4.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5.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과세표준 - 1,200만원)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과세표준 - 4,600만원)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5억원 초과	1억 7,460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물음 1)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① 이자소득금액과 ② 배당소득금액 및 ③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적법하게 분리과세 신청을 하였다고 가정한다.) (10점)

구분	해답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③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	

물음 2)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① 근로소득금액과 ② 기타소득금액 및 ③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구분	해답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근로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기타소득금액	
③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	

물음 3) ①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②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③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③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시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000,000,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82,900,000으로 한다.) (10점)

구분	해답
①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②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③ 양도소득산출세액	

【문제 2】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상장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님)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이다.

1. (주)대한은 2018.3.1. 국고보조금 ₩20,00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20,000,000 (대) 이연국고보조금수익 20,000,000

2. (주)대한은 수령한 국고보조금으로 2018.4.30.에 취득가액 ₩40,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기계장치 40,000,000 (대) 현금 40,000,000

3. 2018.12.31. (주)대한은 위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6,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이연국고보조금수익 3,000,000 국고보조금수령이익 3,000,000

4. (주)대한은 2019.1.1. 위 기계장치를 ₩25,000,000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25,000,000 (대) 기계장치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000,000
 (차) 이연국고보조금수익 17,000,000 (대) 국고보조금수령이익 17,000,000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제18기(2018.1.1.~2018.12.31.)와 제19기(2019.1.1.~2019.12.31.)의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6점)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제18기	3.1.						
	4.30.						
	12.31.						
제19기	1.1.						

<자료 2> 다음은 (주)민국(비상장영리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1. (주)민국은 유상증자를 위해 5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증자 전 (주)민국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A법인주주	80,000주	40%
B개인주주	40,000주	20%
C법인주주	60,000주	30%
D개인주주	20,000주	10%
합계	200,000주	100%

2. 주주 중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3. A법인주주와 C법인주주는 비상장영리법인이며, B개인주주와 D개인주주는 거주자이다.
4. A법인주주, C법인주주, D개인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5. (주)민국의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이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각 경우별로 이익분여액에 대한 개별주주의 세법상 처리를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1)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35,000이고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다른 주주에게 추가 배정하는 경우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A법인주주						
B개인주주						
C법인주주						
D개인주주						

(2)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36,500이고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구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A법인주주						
B개인주주						
C법인주주						
D개인주주						

<자료 3>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규정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만세(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2019.1.1.~2019.12.3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자료이다.

1. (주)만세의 제1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순이익	₩3,000,000,000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700,000,000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500,000,000
	차가감소득금액	3,200,000,000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0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250,000,00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000,000,000
(-)	이월결손금	400,000,000
	과세표준	₩2,600,000,000

2.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내역

- (1) 법인세비용: ₩350,000,000(법인지방소득세 ₩25,000,000,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0,000,000, 전기분 법인세 추징세액 ₩15,000,000 포함)
- (2)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50,000,000
- (3) 접대비 한도초과액: ₩200,000,000

3.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내역

- (1) 전기분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20,000,000
- (2)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470,000,000
- (3) 정기에금 미수이자: ₩10,000,000

4. 당기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은 ₩400,000,000이고, 주식배당은 ₩200,000,000이며,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50,000,000이다.

5. 당기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800,000,000과 차량운반구 ₩640,000,000(중고품 ₩80,000,000과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내 단기 임차(운용리스)한 금액 ₩60,000,000 포함)을 취득하였다.

6. 당기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250,000,000이며, 동 금액에는 당기에 취득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7. 전기 대비 당기의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기 대비 당기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은 ₩200,000,000, 당기에 정규직으로 신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은 ₩100,000,000이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정규직근로자는 없으며, 상시근로자와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4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8. 당기 중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10,000,000을 출연하였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만세의 제19기 기업소득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계산하시오.

- ① 투자액 제외방식에 따른 기업소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식)
- ② 투자액 포함방식에 따른 기업소득(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

(2) 투자액 제외방식에 따른 기업소득이 ₩2,900,000,000(투자액으로 차감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100,000,000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주)만세의 제19기 미환류소득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계산하시오.

- ① 투자액 제외방식에 따른 미환류소득
- ② 투자액 포함방식에 따른 미환류소득

(3) (주)만세의 제19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단, 제18기에서 이월된 초과환류액 ₩30,000,000(제17기 발생분 중 제18기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임)이 있으며 (주)만세는 제19기 미환류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9기의 미환류소득은 위 ‘(2)의 ①과 ②에서 계산된 미환류소득’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문제 3】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사회적기업 아님)의 제19기(2019.1.1.~2019.12.31.)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00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1) 당기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10,000,000(2020.1.2. 만기어음으로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기부금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2) 전기에 국방헌금으로 납부한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당기 중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기부금 5,000,000 (대) 선급금 5,000,000

(3) 당기 중 회사의 제품(장부가액 ₩15,000,000, 시가 ₩20,000,000)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매출원가 15,000,000 (대) 제품 15,000,000

(4) 2019.12.31.에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로부터 건물(시가 ₩80,000,000)을 ₩110,000,000에 매입하고 매입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하였다. 건물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5) 당기 중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장부가액 ₩50,000,000, 시가 ₩80,000,000)를 ₩55,000,000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이를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6) 당기 중 (주)한국이 피투자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현금기부금 ₩15,000,000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5,000,000이다.

4.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발생사업연도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14기 (2014.1.1.~2014.12.31.)	₩2,500,000	-	₩2,000,000
13기 (2013.1.1.~2013.12.31.)	-	₩3,000,000	450,000
12기 (2012.1.1.~2012.12.31.)	1,000,000	-	-

5. 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기부금 한도계산을 제외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란은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기입할 것)

세무조정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A	xxx	xxx	xxx
.			
.			
.			

(2) 기부금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란은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기입할 것)

세무조정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A	xxx	xxx	xxx
.			
.			
.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중소기업)의 제19기(2019.1.1.~ 2019.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1. (주)대한은 2018.5.1. 개인주주(지분율 3%)가 취득 후 3년간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000,000(시가 ₩400,000,000)에 매입하여 즉시 사업에 사용하고, 취득원가를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1)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8기	제19기
자본적 지출액*1)	₩50,000,000	₩20,000,000
수익적 지출액	10,000,000	2,000,000

*1) 자본적 지출액은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이 아님

(2) 동 기계장치의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제18기 ₩40,000,000, 제19기 ₩20,000,000을 계상하였다.

(3) 기계장치의 법정내용연수는 10년이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구분	8년	10년	12년
정액법	0.125	0.100	0.083
정률법	0.313	0.259	0.221

(4) 동 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당기에 해당 세액감면을 받았다.

2. (주)대한은 2018.1.1. 회사보유 토지 위에 제1공장 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여 2019.4.1. 완공하고 즉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1)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0이다.
 - (2) 공장건설을 위해 2018.7.1. ₩800,000,000(이자율 10%)을 차입하고, 당기말 현재 상환하지 않고 있다.
 - (3) (주)대한은 차입금으로부터 전기 및 당기에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4) 당기에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30,000,000이다.
 - (5) 건물에 대한 법정내용연수는 20년으로 가정한다.
3. (주)대한은 기계장치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4. (주)대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7점)
(세무조정은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표시할 것)

구분	세무조정	과목	금액(단위: 원)	소득처분
제18기	A	xxx	xxx	xxx
	·			
	·			
	·			
제19기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국세(중소기업임)의 제19기(2019.1.1.~ 2019.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1. 제18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목 또는 사항	기말잔액
미수금 대손부인액	₩8,000,000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603,200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3,000,000
(주)B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2,000,000
(주)C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분 신고조정액	△3,200,000

- (1) 제18기의 미수금 대손부인액 중 ₩2,500,000은 제19기에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하였으며, ₩1,000,000은 2019.5.31.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 (2)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제19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000,000이다.
- (3) (주)B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18.7.25. 부도가 발생한 어음(2매,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음)이다.

2. 제19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9,000,000	기초잔액	12,000,000
		상각채권 추심	2,500,000
기말잔액	19,500,000	당기설정액	14,000,000
합계	28,500,000	합계	28,500,000

- (1) 당기상계액 중 ₩7,800,000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D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충분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 (2) 당기상계액 중 ₩1,200,000은 (주)C 매출채권으로 제18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일부이다.

3. 제19기 중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원가 ₩2,000,000, 시가 ₩2,600,000(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4. 제19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목	금액	비고
외상 매출금	₩70,000,000	당기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500,000 포함 금액임
받을어음	60,000,000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20,000,000(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포함 금액임
미수금	120,000,000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24,000,000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초과 상당금액 ₩16,000,000 포함 금액임
대여금	133,700,000	채무보증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5,000,000 및 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30,000,000 포함 금액임
합계	₩383,700,000	

5. 전기의 대손실적율은 2.4%이다.

물음 3)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국세의 당기 대손실적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당기 대손금(①)	
전기말 채권잔액(②)	
당기 대손실적율(①÷②)	

(2) (주)국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당기말 채권잔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세무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관련 자료이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000,000이며 아래 주어진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2.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국내소득에서 발생하였다.

발생사업연도	발생액
제17기 (2017.1.1.~2017.12.31.)	₩20,000,000
제12기 (2012.1.1.~2012.12.31.)	40,000,000 ^{*1)}

*1) 이 중 ₩10,000,000은 제15기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되었고, ₩15,000,000은 제16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함

3. 외국에 본점을 둔 해외투자처인 C사(지분을 30%, 취득일 2018.1.1.)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세무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직접 납부한 국외원천징수세액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구분	수입배당금 (원천징수세액 포함)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세액	C사 소득금액	C사 법인세액
금액	₩20,000,000	₩2,000,000	₩300,000,000	₩50,000,000

4.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사업연도	19기	18기	17기	16기	15기
발생액	₩20,000,000	₩19,000,000	₩16,000,000	₩18,000,000	₩15,000,000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없다.

(3) (주)세무는 전기에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19년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5. 당기 중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500,000이다.

6. (주)세무는 법에서 정하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물음 4) <자료 4>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적용 공제율은 당기 발생분은 15%, 전기 대비 초과발생분은 40%로 한다.)
-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 (3) 최저한세를 계산하시오. (단, 최저한세율은 8%로 한다.)
- (4)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오.

【문제 4】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1. 국내 수출업자인 (주)서울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120,000의 제품을 2019.11.25. 인도하였다. 인도대금 중 \$50,000은 2019.11.1. 선수하여 원화 ₩60,500,000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70,000은 2020.1.5. 수령하였다. 내국신용장은 2020.1.10. 개설되었다. 2019.11.25. 기준환율은 ₩1,250이며 2020.1.5. 기준환율은 ₩1,270이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주)부산에게 ₩50,000,000의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주)부산은 인도된 제품 중 70%는 과세사업에 30%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구(수출업자 (주)인천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에게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7,000,000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4. 국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30,000,000의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수령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급받은 재화의 80%를 해외구급봉사에 무상으로 반출하고 20%는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5. (주)대전에 제품 A와 제품 B를 다음과 같은 대금회수조건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지급약정일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제품A ^{*1)}	2019.10.4.	₩3,000,000	2020.1.20.	₩5,000,000	2020.6.15.	₩2,000,000
제품B ^{*2)}	2019.10.5.	₩4,000,000	2019.11.20.	₩6,000,000	2020.2.15.	₩5,000,000

*1) 2019.10.10.에 계약자와의 합의로 제품 A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7,000,000을 2020.6.15.에 일시에 수령하기로 변경하였다. (계약금은 2019.10.4.에 수령함)

*2) 2019.10.30.에 계약자와의 합의로 제품 B에 대한 중도금 ₩6,000,000은 2019.12.30.에 잔금 ₩5,000,000은 2020.6.20.에 수령하기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당일자에 수령함)

6. 2019.10.5.에 (주)광주에 제품 C를 ₩27,00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2019.12.5.에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450,000을 포함하여 ₩27,450,000을 수령하였다.

7. 2019.12.30.에 거래처 (주)서울에게 2019.7.1.~2019.12.31.까지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3,000,000 및 판매장려품(시가 ₩1,560,000, 원가 ₩1,200,000)을 지급하였다.
8. 2019.11.1. 고객에게 공기청정기(시가 ₩800,000 원가 ₩600,000)를 판매하고 대금은 S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되었으나, S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였다.
9. 2019.10.27.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주)울산과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19.12.27.이다.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2019.6.30.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계약서상 공급가액
토지	₩140,000,000	₩140,000,000	₩160,000,000	₩180,000,000	₩350,000,000
건물	160,000,000	120,000,000	100,000,000	150,000,000	140,000,000
구축물	100,000,000	50,000,000	-	70,000,000	50,000,000
합계	₩400,000,000	₩310,000,000	₩260,000,000	₩400,000,000	₩540,000,000

물음 1)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19.10.1.~2019.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기입하십시오.
(12점)

자료번호	과세표준	세율	매출세액
1			
·			
·			
·			
9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햄통조림제조업)과 면세사업(육류도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 2019년 제2기 공급가액

구분	2019년 제2기		
	7.1~9.30.	10.1~12.31.	합계
면세사업	₩25,000,000	₩35,000,000	₩60,000,000
과세사업	95,000,000	145,000,000	240,000,000
합계	₩120,000,000	₩180,000,000	₩300,000,000

2. 2019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기간)	공급가액	내역
10.1.~12.31.	₩7,500,000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임
10.1.~12.31.	14,500,000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임
10.11.	400,000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음식대금임
10.20.	20,000,000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운반구로 제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입함
11.7.	12,000,000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공장이 노후화되어 기존 공장을 허물고 신축하기 위한 기존 공장의 철거 비용임
12.17.	9,000,0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구입함
합계	₩63,400,000	

3. 2019.9.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를 발급받았으나 예정신고시 누락되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기로 하였다.

4. 2019.10.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모품 ₩700,000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5.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8.10.8. 구입한 트럭을 2019.11.1.부터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트럭의 취득시 공급가액은 ₩35,000,000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되었다.

6.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처분 받은 ₩7,7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2019.11.3. 변제하였다.
7. 2019.11.20. 과세사업에 사용할 컴퓨터 4대를 ₩8,000,000에 외상으로 구매하였으며, 대금은 2020.1.20.에 지급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8. 2019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19.10.1.~2019.12.31.)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돼지고기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기초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2019.10.1.~2019.12.31.
매입	₩52,700,000
과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됨	18,700,0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원재료로 사용됨	27,500,000
기말재고액 ^{*1)}	6,500,000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물음 2)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19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구분	세액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2. 예정신고 누락분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4. 의제매입세액	
5.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6. 변제대손세액	
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8.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9. 차가감계(1+2+3+4+5+6-7-8)	

세법학 1부

【문제 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2011년 10월경 A주식회사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乙에게 甲 소유의 B주식회사(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만 정하여 준 채 매도가격, 매도상대방, 매도시점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1년 11월경 甲 소유의 B주식회사 주식 50만 주를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주식 50만주의 매도과정에서 C주식회사의 과장 丙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 다음, 위 주식 50만주를 丙이 내세운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매도하였다가 D주식회사가 다시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단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乙은 2011년 12월 15일에 C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00억원을 지급받은 후 80억원과 차액 20억원을 자신이 취하여 개인 빚을 갚는데 모두 소진하였는바, 그 무렵 다른 채권자들과의 민사재판 결과에 따르면 乙은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지시받고는 2012년 2월경 甲과 D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위 주식을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은 신고내용의 탈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5월 4일 甲에게 그 차액 20억원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이고, A, B, C, D는 모두 내국법인으로 전제하며, 가산세는 논외로 함)

물음 1) 위 처분 중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甲이 위 증권거래세 증액경정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단, 이 사례에서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2년 3월 1일이라고 전제한다.) (12점)

물음 2)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 乙이 취한 양도대금 차액 20억원이 甲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문제 2】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거주자 甲은 내국법인 A주식회사에서 1998년경부터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거주자 乙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甲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乙 및 乙의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乙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甲은 乙이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14년 7월 12일 乙로부터 A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2018년 1월 30일에 70억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甲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사례2>

거주자 丙과 거주자 丁은 2004년경 봉제완구 제조·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국내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국제금융불안과 국내경기 부진으로 2016년 2월 27일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丙과 丁은 동업관계 청산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에 따라 丙이 丁으로부터 청산의 대가로 15억원을 지급받되, 丙은 홍콩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丁은 나머지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각각 소지하고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15억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패턴의 공유의무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丙은 이 합의에 따라 丁으로부터 2016년 10월 15일 현금 15억원을 지급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물음 1)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물음 2) <사례1>과 <사례2>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각 판단 및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점)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내국법인 A주식회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방문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은 A법인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며, A법인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한 상품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위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A법인의 건강보조식품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가 정 >

- 1) 건강보조식품의 개당 매입가는 60만원, 판매가는 100만원이다. (매입가와 판매가는 항상 변동이 없다.)
- 2) 판매원들로부터 수령하는 건강보조식품 개당 계약금은 30만원, 잔금은 70만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개당 20만원이다.
- 3) 2015년도에 해당 상품의 매입이 있었고, 2016년도에 판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수령 및 판매수수료의 지급이 있었으며, 2017년도에 상품이 인도됨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 4) A법인의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에 관한 동종업계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 5) 이 사안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상품판매가 아니다.
- 6)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 회계처리 >

1) 2015년도 상품 매입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상품 600,000원	현금 600,000원

2) 2016년도 상품 판매 계약금 수령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현금 300,000원	선수금 300,000원
판매수수료 200,000원	현금 200,000원

3) 2017년도 상품인도시 회계처리

차 변	대 변
매출원가 600,000원	상품 600,000원
현금 700,000원	매출 1,000,000원
선수금 300,000원	

물음 1) A법인은 위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판매가격 100만원을 판매 계약 시점인 2016년도가 아니라 판매한 상품의 인도시점인 2017년도에 매출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제 원칙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물음 2) A법인은 위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 20만원을 판매한 상품의 인도시점인 2017년도가 아니라 판매수수료 지급시점인 2016년도에 손비로 인식하였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제 원칙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문제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피상속인 甲이 2018년 2월 1일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토지 한 필지가 있었다. 피상속인 甲의 공동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거주자 乙, 그의 아들인 거주자 丙, 그의 딸인 거주자 丁이 있다. 丙은 당시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바, 상속을 받을 경우 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2018년 10월 15일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공동상속인들은 乙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여 丙의 채권자 戊가 미처 丙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기 전인 2018년 10월 25일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물음 1)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산출된 7천만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하고자 한다. 공동상속인 乙, 丙, 丁이 지는 각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및 그 세액과 공동상속인들 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물음 2) 위 사례와 같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丙, 丁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을 乙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관련 조문>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② 생략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생략

세법학 2부

【문제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간접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 물음 1) 甲은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임대를 고민 중이다.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따라 임차인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 물음 2) 일반과세자 乙이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와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포함)을 분양하는 경우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공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건물면적에 대한 실지귀속은 정해져 있다.) (10점)
- 물음 3)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丙대학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하는 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제도의 ① 취지, ② 공제요건, ③ 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④ 일부과세전환에 대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제 2】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2019년 1월 개인 甲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A1과 A2를, 개인 乙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B1과 B2를, 그리고 개인 丙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C1과 C2를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 丁의 ‘신탁 I’에 신탁하였고, 모든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완료되었다.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신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 때 丁의 고유재산 중 토지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D1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D2가 있다. 한편, 丁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 받은 토지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단, 「지방세법」 등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다.)

물음 1) 위 사례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과 그 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회사의 고유재산과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에 의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 이 변경으로 인한 논쟁사항을 설명하시오. (8점)

【문제 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甲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A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자 면세승인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2019년 3월 5일 그 승인을 받았다.

물음 1) 위 사례의 면세승인은 甲이 A를 수출 및 군납 면세를 위해 받은 것이다. 甲이 A를 반출한 후 용도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위 사례의 면세승인은 甲이 A(자동차)를 외교관 면세를 위해 받은 것이다. A(자동차)를 소유한 주한외교관 乙이 본국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2019년 8월 5일 丙에게 이를 양도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개별소비세법」상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시오. (5점)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와 영농사업용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취지·감면요건·감면내용·사후관리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감면요건·감면내용·사후관리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에 대하여 비교·설명하시오. (5점)